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65

발의연월일: 2021. 7. 19.

발 의 자:김경만·김남국·양정숙

이용빈 · 홍정민 · 홍성국

송옥주·문진석·김홍걸

김수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현행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40%, 대·중견기업 최대 30%)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12%, 중견 5%, 대기업 3%)를 하고 있으나 국가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적 극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60%, 대·중견기업 최대 50%)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20%, 중견 10%, 대기업 8%)를 신설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24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를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를"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 한다.

-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4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 및 2)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100분의 3(중 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 액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 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24조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 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	세액공제) ①
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	
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이 경우 <u>제1호는</u>	제1호 및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	1
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	
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	
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	
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 가. (생 략)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
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
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
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신 설>

가. (현행과 같음) 나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급하여 계산한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경우: 100분의 50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 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보내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4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
	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
	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_	을 한도로 한다.
3.	<u>제1호 또는 제2호</u>
	<u>제1호 또는 제2호</u>

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 나. (생 략)

- ②·③ (생 략)
-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 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u>일반연구·인력개발</u>
비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
발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
발비
⑤·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1. (현행과 같음)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2.		
	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	자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

나. (생 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 화시설"이라 한다)에 투 자하는 경우에는 100분 의 8(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현행과 같음)

$(2) \sim (4)$	(연행과	(살음)

5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